

- 제10조 【우리동네착한장터 운영위원회 구성】 ①동네장터를 위해 우리동네착한장터 운영위원회(이하 동네위원회)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동네위원회는 조합이 제공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터를 운영하며, 조합원 모집, 판매자 구매자의 모집, 장터의 세부행사 기획, 동네장터의 진행, 기부처 추천, 착한이웃가게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동네위원회는 의결은 과반참석과 참석자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,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찬반 동수일 경우,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따른다.
- ④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.
- ⑤운영위원은 조합원으로서 동네장터 개최지의 거주자로 하며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승인한다.
-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의 재적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위원장 후보를 선임하며 이사회에 임명을 요청한다. 이사회에 위원장의 임명을 요청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⑧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⑨동네장터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승인한다.
- ⑩임기 내 위원장이 궐석되면 같은 방식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되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.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1조 【착한이웃가게(단체) 운영】 ① 착한장터 조합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합은 착한이웃가게(이하 이웃가게)를 지정하여 상호 협력한다.
- ② 이웃가게는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해야 하며, 타 업체에 비해 윤리적이어야 한다.
- ③ 이웃가게는 동네장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승인한다.
- ④ 동네 위원회는 객관적인 추천근거를 조합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이웃가게 인증은 이웃가게와 조합이 조합의 협정서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- ⑥ 이웃가게 선정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, 동네위원회는 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⑦ 이웃가게와 같이 착한이웃단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천하고 인증할 수

있다.

⑧ 이웃가게의 구성은 가능한 한 다양한 업종으로 하고,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운영위원회는 노력하여야 한다.

⑨ 이웃가게가 동네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위원회는 노력하여야 한다.

⑩ 이웃가게의 주요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웃가게의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연장할 수 있다.

2. 동네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이웃가게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3. 이웃가게에 조합원이 구매를 할 시, 이웃가게는 조합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,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. 할인율과 기부율은 조합이 이웃가게에 제시하며, 특별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협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4. 조합은 이웃가게의 표식과 지정근거를 기재한 인증서를 이웃가게에 전달해야 하며, 이웃가게는 가게 외부에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, 가게 내부에는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다.